

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- 가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- 나. 의안번호 : 제1134호
- 다. 제출일자 : 2023. 8.14.
- 라. 회부일자 : 2023. 8.21.

2. 제안사유

-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 제3항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가.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함(안 제2조의2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

나. 예산조치 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다. 협의사항

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- 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평가제외
- (5) 시민협력과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없음
- 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- 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검토의견:
해당없음

라. 입법예고

- 기 간 : 2023. 6. 15.~2023. 7. 5.
- 제출의견 :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장훈)

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을 위해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로 설치·운영하고 있는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(이하 '특별회계'라 한다)의 존속기한이 “2023년 12월 31일”까지로 되어 있어 보다 안정적인 회계 및 예산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“2028년 12월 31일까지”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

※참고1: 「지방재정법」 관련 규정(2014.5.28.)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나. 검토의견

- 서울시는 도시철도 건설 또는 운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「지방자치법」 제141조제2항1)의 규정에 따라 1993년 9월 「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」(이하 '조례'라고 한다)를 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음

1) 「지방자치법」 제141조(회계의 구분) 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

- 조례 제정 당시에는 동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규정하지 않았으나 특별회계의 난립 방지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014년 5월 「지방재정법」 부칙 제4조제2항²⁾에 따라 동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“2018년 12월 31일”로 규정한 이후 지난 2018년 9월 조례 개정을 통해 “2023년 12월 31일”로 한 차례 연장한 바 있음³⁾

동 조례 개정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 제3항에 따라 “2028년 12월 31일”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동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

- 동 특별회계의 '23년 기준 예산규모는 2조 94억 83백만원으로 현행 조례에서는 세입과 세출 항목을 세부적으로 정해 놓고 있으며, 9호선 4단계 건설, 동북선 및 서부선 경전철 건설, 현재 운영 중인 지하철 1~8호선 노후시설 교체를 포함한 운영자금 지원 등 서울시 도시철도망 확충과 지하철 이용안전을 위해 다른 회계와는 별도로 구분되어 운용되고 있음

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이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구분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

2) 「지방재정법」 부칙(2014.5.28.) 제4조(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등)

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.

3)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교통위원회(2018년 9월 7일 상정·의결)

동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회계 소멸로 인해 기존 세입이 일반회계로 전입됨에 따라 다년간에 걸쳐 추진되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물론 노후화된 도시철도 시설물 개선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

- 또한,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⁴⁾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⁵⁾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이 가결되었음

※참고2: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·세출 항목

세입	세출
1.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, 용자금	1. 도시철도건설사업비와 역세권개발사업비
2. 국고보조금 및 정부용자금	2. 도시철도건설에 수반되는 보상적 경비
3. 지방채 수입금	3. 용자금 및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
4.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의 부담금	4. 도시철도 운영사업에 대한 전출금 및 출자금
5. 도시철도법의 규정에 의한 역세권개발사업에 따른 수입금	5. 도시철도 건설기구의 운영비
6. 회계 소속 재산의 매각대금 및 임대수입금	6. 그 밖에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제경비
7. 그 밖에 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	

4)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4항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5) 재정담당관-6214('23.5.26.) “2023년 제1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통보”

-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(안): 원안가결

- 따라서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연말로 되어 있는 동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함으로써 도시철도망의 적기 구축을 통해 교통사각지대의 대중교통난을 해소하고 지역간 균형발전과 함께 노후화된 지하철 1~8호선에 대한 안전재원을 확보하여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환경 및 안전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
- 다만,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시 지적된 바와 같이⁶⁾ 향후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성과관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

6) 재정담당관-6214('23.5.26.) “2023년 제1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통보”

※위원회 권고사항: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성과관리를 적절히 시행하기 바람